

보험목적물의 수용장소와 관련된 조정사례

이 성 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책임역

1. 머리말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동산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에 있어 화재보험증권 등에 동산이 수용되는 장소를 명기하는데 이와 같이 수용장소를 명기하도록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용장소의 환경이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고,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손해액 산정의 범위를 한정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보험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접수되어 처리되는 분쟁의 유형을 살펴보면 보험회사가 산정한 손해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건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보험목적물의 수용장소와 관련한 분쟁조정신청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보험목적물의 수용장소와 관련된 조정사례를 소개한다.

2. 분쟁조정사례

가. 사실관계

신청인 갑이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모방(주), 보험목적/양모, 반제품 및 제품, 보험기간/1988.3.20-1989.3.20 및 1988.4.1-1989.4.1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1988.5.25 4시 30분경 공장건물 건조기 부근의 천장에서 전기합선(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기계시설 및 재고동산이 소실 또는 오손되는 사

고 발생하였다.

나.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본 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창고 및 공장이 함께 연결된 단일 건물로서 그 안에 수용되는 동산은 작업공정이나 성질상 수시로 동 건물 내로 이동하고 단일건물 중 특정된 일부 면적에 적치되어 있는 동산만을 제한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서 본 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화재로 인한 공장부분의 동산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본 건 화재보험계약이 청약서 및 증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방(주)의 철골조 스프레트지붕 단층건물 창고 1동 내에 수용된 동산만을 담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재사고는 창고가 아닌 공장건물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여 작업장 내 동산을 소실 및 훼손시켰으므로 화재로 인한 동산손해액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되어 위 화재보험에서는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면책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화재해상손해사정(주)의 화재손해사정보고서(1988.6.14)에 의하면 신청인의 공장은 2개 필지 위에 2개 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위 필지에 있는 건물은 공장건물과 창고건물로 구분된 별도의 건물이나 다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본 건 화재사고는 공장건물(2,104.54평) 내에서 발생하여 동 건물 내에 있는 재고동산이 소실되었고 창고건물 내에 수용되어 있는 재고동산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모집경위서, 본 건 청약서 및 화재보험증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보험목적물은 창고건물 내에 수용된 동산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화재로 소실된 공장건물 내의 동산은 보험목적 수용장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공장건물에 수용된 동산이 본 건 화재보험에 가입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견 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3. 맺는 말

가. 보험목적의 의의와 종류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산 또는 사람을 말한다. 예컨대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건물이 이에 해당한다.

화재보험이 속해 있는 손해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의 목적인 경제상의 재산으로는 유체물로서 물건뿐만 아니라 채권과 같은 무체물이 포함되고, 단일물(합성물포함), 집합물도 가능하며 특정한 물건이나 포괄적인 물건도 포함될 수 있다. 단일물이나 합성물의 개개의 물건을 목적물로 하는 보험을 개별보험이라 하고, 특정장소 내에 있는 집합된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집합보험, 보험목적의 특정된 것을 특정보험,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수시로 교체가 예정된 것을 총괄보험이라고 한다.

나.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

화재보험에서는 보험증권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를 명기하도록 하고 있고, 동산을

동산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에서 보상대상이 되는 손해는 보험계약 시에 지정한 장소에 소재하는 피해물이어야 하며 지정된 수용장소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피해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 본 조정사례의 의의와 시사점

신청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은 특정된 동산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 수용되어 수시로 교체되는 동산을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총괄보험으로 보인다. 동산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에서 보상대상이 되는 손해는 보험계약 시에 지정한 장소에 소재하는 피해물이어야 하며 지정된 수용장소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피해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은 창고와 공장건물을 목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였고 동산에 대해서는 창고에 소재하는 것만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공장건물과 창고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장건물에서 피해를 입은 동산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장과 창고건물은 통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 사회통념상 구별되는 별개의 건물로 되어 있고, 증권상에도 동산이 수용되는 장소를 창고로 명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공장건물 내에 적치되어 피해를 입은 동산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내린 조정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에 대하여 비전문가인 보험계약자로서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손해가 담보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화재보험을 인수함에 있어서 보험물건별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가능하면 모든 위험이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보험약관 내용중 보상하는 손해와 면책되는 손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